

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11(화)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9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 12. 22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박현창)

가. 제안이유

- 2004년중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경영의 건실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평창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(요금)중 【별표2】의 요율표를 평균톤당 38%인상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먼저, 본 조례의 관련법을 살펴보면

- 수도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업자인 경우에는 수도물의 요금,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
○ 상수도 요금은 1998년 인상을 끝으로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최근 신규 상수도시설에 대한 대부분 투자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기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과 요금징수액 대비 생산원가가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경영의 건실화를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.

○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38%의 요금인상시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몇 %정도선까지 예상되는지?	○ 현재 33%의 현실화율에서 38%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